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작 및 설치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문제작 제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를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화조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의 보강링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요?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A

하수도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수도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의 처리용량 범위에서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별표 12의 기준은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2 제1호 가목에 따른 보강링의 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에 한해 적용되므로 정화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유독물과 일반 화학물질의 운송은?

유독물은 1톤 미만일 경우 일반 화물 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하나 1톤 이상 운송시 유독물 운송에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유독물 처리 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는 전용 차량으로 운송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독물을 1톤 미만으로 하면 일반 화물과 1대의 차량에 혼적하여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물 1톤 미만과 일반 화학물(유독물로 분류가 되지 않은) 1톤 이상을 1대의 차량으로 혼적하여 운송시 유독물 운송 관련 면허와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나요? 또한 유독물 1톤 미만과 일반화학, 일반 화학물을 1대의 차량으로 혼적하여 운송하는 것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 관리법)상 특별하게 규정된 내용이 있나요?

A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유독물영업 취급시설기준)에 유독물 운반의 경우 "1) 고체상태의 유독물,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변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액체상태의 유독물(밀폐용기에 담긴 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독물 운반업의 경우 유독물영업의 등록신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시설) 용량 변경시 신고는?

어떤 지역에 초기 우수 발생량이 10톤이고 그에 따라서 15톤짜리 용량의 제품(장치형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이나 비용등을 검토했을때 15톤짜리 제품 대신 12톤짜리 제품(용량 외 형식은 동일)으로 용량을 줄여서 설치할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제품 타입 변경으로 설치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단 초기 우수 발생량보다는 처리용량이 큼)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15톤)을 다른 용량(12톤)으로 변경하는 경우, 우수 발생량(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 하더라도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Q 대기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

저희 회사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 직원보건상 방지시설을 설하려고 합니다.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자가측정 및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A 대기배출시설과 무관하게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은 자가측정 및 운영일지 기록·보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대기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은?

당사에 일부 공정을 폐쇄하지는 않고 생산설비(배출시설)를 무기한 가동 중단 예정입니다.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방지시설도 언제 가동될지 모릅니다. 장기간 무가동 발생시 자가측정(특정물질 월 2회)을 실시해야 하나요? 일지는 무가동시 매일 무가동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A 대기배출시설을 일정 기간동안 가동하지 않는 경우 자가측정, 운영일지 등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배출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동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은 생략할 수 있을 것이며, 관할 관청에서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면 동 기간 동안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